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77호 2015. 3.2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373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3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386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31

기 타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1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34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4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487번길 28-2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3. 20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3-2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8-4	검단로487번길 28-2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7-18	원적로27번길 11 (가좌동)	20090706	원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468-1	서곶로 904 (마전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06-5	승학로 557 (검암동)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렸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0-20	북항로 76-38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7	신진말로28번길 43 (가좌동)	20090922	신진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0-12	염곡로 74 (가좌동)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6-1	도요지로 238 (검암동, 다채움)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3	청라루비로42번길 10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5-10	마중로 182 (오류동)	20121025	"나가서 맞이한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5-2	보듬1로 15 (오류동, 주1동)	20121025	보듬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7-1	대곡로 279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32	북항로32번길 47-14 (원창동)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3.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 557외 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고시일 : 2015-03-20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506-5	승학로557	2015-03-11	건물 멸실	
2	인천 서구 검암동 666-1	도요지로 236	2015-03-13	건물 멸실	
3	인천 서구 마전동 1002-14	완정로10번길 1	2015-03-12	건물 멸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373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명칭 변경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및 폐기년월일 : 2015년 3월 23일


3. 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경제에너지과민원전용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5년 3월 23일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경제지원과민원전용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	2015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37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전파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문 내용중 ‘사람’을 ‘자’로 변경하고 ‘징수유예V등’을 ‘징수유예등’으로 변경함.
-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 정비(안 제25조)
- 체납처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10일’을 ‘1개월’로 하여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안 제4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22조 중 “징수유예 등을”을 “징수유예등을”로,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를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유예 등을”을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수유예 등의 취소)”를 “(징수유예등의 취소)”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영 제8조제2항”으로, “징수유예 등을”을 “징수유예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수유예 등을”을 “징수유예등을”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을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람”을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람과”를 “자와”로 한다.

제35조 중 “사람으”를 “자”로,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 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을 “(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생략)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

징수유예등-----

② ----- 징수유예등을-----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현행과 같음)

제25조(납세담보의 요구) -----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생략)

제31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생략)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1. 영 제8조제2항
징수유예등을

2. 징수유예등을

3. (현행과 같음)

제31조(질문·검사권) 자

1. (현행과 같음)

2. 자

3.

사람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

5.·6. (생략)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 자

4. -----
----- 자

5.·6. (현행과 같음)

제32조(참여자의 설정) ① -----

----- 자와 -----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

----- 자 -----

----- 자를 -----.

제40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제40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개월
간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

----- 징수유예등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p><u>등)</u>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u>징수유예</u>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u>등)</u> ----- ----- ----- ----- ----- ----- ----- <u>징수유예등</u>----- -----.</p>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379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10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로 변경 (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100을”을 “75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u>대하여</u>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u>100</u>을 감면한다.</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u>대해서</u> ----- ----- ----- ----- <u>75</u>를 -----.</p>
<p>제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제7조(감면신청 등) ①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 ----- ----- ----- ----- -----.</p>

<p>② (생략)</p> <p>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p>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3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유사 허가수수료(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

2. 주요내용

-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 기준에서 'MagaByte'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3])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1건당 10,000원으로 하고,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0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192,

FAX 032-560-27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7. 환경분야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을 “0원”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분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	8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	800원	
(4)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	800원	
(5) 건설공시기성실적증명(물품, 용역)	1통당	300원	
(6) 선급금 정산확인원	"	300원	
(7)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당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1통당	600원	
2. 문화관광체육분야			
(1)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	20,000원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5,000원	
(9)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10)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1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60,000원	
(1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	50,000원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30,000원	
(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 수수료	"	30,000원	
(1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0원	
(1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	10,000원	
(18) 영화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	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3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5,000원	
(3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	4,000원	
(3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100,000원	
(3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	50,000원	
(3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30,000원	
(3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	20,000원	
(4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	50,000원	
(4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등록신청 수수료	"	30,000원	
(4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20,000원	
(4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4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	30,000원	
(4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	10,000원	
3. 부동산중개업분야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	30,000원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800원	
(4)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	800원	

(6)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 신고 수수료	"	0원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	800원	
4. 농수산업분야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2,500원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9,000원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7,500원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5,000원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5,000원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8)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	30,000원	
(9)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	20,000원	
(10)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1,000원	
(11)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5,000원	
(12)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13)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	1,000원	
(1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4,000원	
(17)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2,500원	
(18)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19)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1,000원	
(20)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1,000원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1,000원	
(22)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1,000원	
(23)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24)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1,000원	
(25)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1,000원	
(26)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7)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2,500원	
(28)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4,500원	
(29)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0)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	4,000원	
(31)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1,500원	
(32)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2,000원	

(33)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2,000원	
(34)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2,000원	
(35) 어업 신고 수수료	"	1,500원	
(3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1,500원	
(3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500원	
(3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1,000원	
(39)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800원	
(40)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41)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800원	
(42)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1,000원	
(43)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3,000원	
(44)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3,000원	
(45)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2,000원	
(46)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7)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3,000원	
(48)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4,500원	
(49)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3,000원	
(51)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	1,000원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2,000원	
(5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1,000원	
(5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1,000원	
(5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3,000원	
(5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8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60) 어획물 운반업 등록	"	5,500원	
(6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	500원	
(6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 허가	"	1,000원	
(6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 허가	"	500원	
(64)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허가, 변경 허가 포함)	"	1,600원	
(65)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허가, 변경허가 포함)	"	800원	

(66)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건조발주 허가, 변경 허가 포함)	"	2,000원	
(67) 어획물운반법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개조발주 허가, 변경허가 포함)	"	1,000원	
5. 공장설립분야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	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	1,000원	
6. 석유판매업분야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10,000원	
7. 환경분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	10,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	0원	
8. 보건사회분야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	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수수료	"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	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	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	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	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	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	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40,000원	
(13)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	800원	
(14)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통당	500원	
(1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당	40,000원	
(16)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20,000원	

9. 도시계획분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2) 환지(예정지) 증명	1통당	400원	
10. 교통행정분야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	1,500원	
(5)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원	"	1,000원	
11.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 등본·초본	1통	200원	
(2)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3)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4)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필지	6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칼러불가)	8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교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386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23.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및 훼손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및 폐기년월일 : 2015년 3월 27일

3. 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

“별첨 참조”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석남1동장인/민원전용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2015년 3월 27일	
석남3동장인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2015년 3월 27일	
석남3동장인/민원전용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2015년 3월 27일	
검단5동장인	훼손	2015년 3월 27일	

○ 폐기공인 내역

폐기공인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인 영
석남1동장인/민원전용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2015년 3월 27일	
석남3동장인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2015년 3월 27일	
석남3동장인/민원전용	장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2015년 3월 27일	
검단5동장인	훼손	2015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이 중 민

2015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17 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7일”을 “10일”로 변경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절차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결산”은 “기금결산”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